##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14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김동아·한준호·서삼석

허성무 • 민형배 • 최기상

박희승 · 임미애 · 정성호

정준호 · 김정호 · 복기왕

김우영 • 윤후덕 • 윤준병

전재수 · 정을호 · 김 유

김영호 • 이병진 • 허종식

의원(2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 도록 하는 한편, 등록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,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신설). 법률 제 호

###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사망·실종·퇴직 또는 휴직으로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의3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2조의3(측정기기 관리대행업	제32조의3(측정기기 관리대행업		
의 등록취소 등) ① 환경부장	의 등록취소 등) ①		
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		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		
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			
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			
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			
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	<u>.</u>		
제1호, 제4호, 제5호 또는 제7			
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			
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
3.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	3		
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		
<단서 신설>	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		
	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기술		
	인력의 사망・실종・퇴직 또		
	는 휴직으로 일시적으로 등록		
	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		
	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		
	<u>외로 한다.</u>		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	